오메프라졸 특허분쟁 승소

특허청, 한미약품 대상 스웨덴 아스트라 이의신청 기각

세계적인 궤양치료제 오메프라졸을 둘러싸고 한미약품과 종근당 등 국내기업과 스웨덴 아스트라의 특허분쟁에서 국내기업이 잇따라 승소, 3년 가까이 끌어온 특허분쟁이 국내업계의 승리로 종결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근당 · 한미약품 등 국내 제약업계는 오메프라졸 제제의 제조방법 특허를 둘러싸고 다국적 제약사인 스웨덴 아스트라와 벌여온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특허청은 11월28일 90년 한미약품이 특허출원한 오메프라졸 경구용 제제(상품명 라메졸)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에 대한 아스트라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한미약품에 특허사정을 통보했다.
이에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9월 아스트라가 수원지법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또 종근당 9월 아스트라의 제조방법 특허를 상대로 특허청에 청구한 권리확인 심판에서 종근당의 오엠피정 제조기술 아스트라의 제법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상이한 제법이라는 심결을 받아냈다.
한미약품과 종근당의 승리는 현재 특허청에 권리확인 심판 및 무효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는 영진약품 등 6개 국내기업과 아스트라간의 분쟁에서도 국내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88년 스웨덴 아스트라가 처음 내놓은 오메프라졸 제제는 93년 전세계 매출액이 1조 2700억원(단일품목 매출 3위)의 매출을 올린 획기적인 의약품이다.
국내에서는 종근당 등 8개 기업이 92년과 93년에 이를 개발했으나 아스트라 측과 제조방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특허분쟁을 벌여왔었다.
오메프라졸 특허 분쟁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오메프라졸 제제를 개발한 한미약품과 종근당이 아스트라 측과 직접적으로 맞붙었으며 이들 회사에 뒤이어 제제를 개발한 중외제약(상품명 리절트), 선경제약(상품명 오메드)등 4개사가 현재 분쟁에 얽혀 있다.

<화학저널 1994/12/26>